2006년 제56차 자유구역법

(2002년 5월 22일 공포/2002년 6월 1일 시행)

제1절 정의와 총칙

제1조: 이 법령을 적용하는데 있어 본문에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단어와 표현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세금: 이 법에서 부과하는 모든 종류의 세금

비용: 예외로 지정한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시행 중인 법과 규정과 규칙에 따라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비용

위원회: 자유구역위원회

특혜협정: 정부가 자유구역운영기관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유구역운영권리를 부여한 협정

자유구역: 이 법의 제2조에 따라 국왕령으로 설립한 모든 자유구역

관세지역: 자유구역을 제외한 오만 내 모든 지역

운영기관: 특혜협정에 따라 자유구역운영권리를 부여 받은 모든 기관 또는 회사 또는 기업

활동 중인 회사: 자유구역 내 활동이행을 허가 받은 오만 또는 외국회사 및 기업 또는 회사 및 기업의 대표사무소 또는 지점

물품: 자유구역에서 활동 중인 회사를 통하여 어떠한 목적에 따라 그 전체 또는 일부가 사용되거나 생산되거나 유통되거나 제조되거나 소비되는 모든 기계, 설비, 물질, 상품, 부품 또는 연료

구역시스템: 모든 허가, 승인, 동의, 비자발급과 활동하는

회사등록절차완료와 이 법에 따라 자유구역을 운영하거나 구역 내에서 활동하는 기관 및 회사에 관련한 모든 규정과 규칙적용에 관한 시스템

제2조 자유구역은 그 위치, 경계, 구역을 운영하거나 구역 내에서 활동하는 기관과 회사에 부여하는 혜택과 편의에 대하여 명시한 국왕령을 통하여 설립한다. 이 법 또는 국왕령에서는 자유구역설립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오만 내 시행하는 모든 법과 규정과 규칙은 자유구역에 적용한다. 자유구역설립에 관한 법령시행일자부터 이 법 또는 자유구역설립에 대한 국왕령에서 명시한 모든 혜택 또는 편의를 제3의 기관에게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자유구역운영 및 구역 내 활동기관 및 회사는 세금과 「회사에 대한 소득세법」에서 명시한 소득신고의무를 면한다. 위원회에서 지정한 규정에 따라 재정부장관의 면세관련결정을 공포한다.

제4조 「회사법」과 「외국자본투자법」의 규정은 제외하고, 자유구역 내에서 활동하는 회사는 전적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회사도 가능하다.

제5조 자유구역 내에서 활동하는 회사는 허가 받지 아니한 활동 또는 사업을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시행 중인 법과 규정과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관세지역에서 상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무역산업부장관이 관할하는 자유구역위원회구성원에 관한 규정)

제7조 (자유구역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규정)

제2절 자유구역운영기관에 대한 혜택과 편의

제8조 (자유구역운영기관에 대한 운영권리부여에 관한 규정)

제9조 (자유구역운영기관의 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의 기관에 대한 자유구역운영기관의 권한이행불가에 관한 규정)

제3절 자유구역 내 활동회사에 대한 특혜와 편의

제11조 자유구역위원회는 구역 내에서 활동하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법」과 그 밖의 다른 법에 명시한 최소자본에 관한 조건을 면제하여 줄 수 있다.

제12조 「정당한 보상지급대가에 관한 법」에 따른 경우에 한하여 자유구역 내 활동하는 회사를 국유화할 수 있으며, 법정판결을 통하여서만 회사재산압류 또는 몰수 또는 감사이행이 가능하다.

제13조 자유구역 내 활동회사에 대하여는 외국통화공급, 유통, 송금에 대한 규제를 면제하여 주고, 「상업대리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자유구역 내에서 사업 및 활동을 이행하고 자유구역위원회가 지정한 일정 비율의 상품을 수출하는 회사에 한하여 이 법과 자유구역설립에 관한 국왕령에서 명시한 혜택과 면세와 편의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자유구역 내에서 활동하는 회사는 모든 방식을 통하여 다른 기관에 상기 명시한 모든 혜택을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 관세지역 내에서 영업하는 외국회사 및 기업 또는 이 회사 및 기업의 대리점 또는 지점은 오만정부와 공공위원회 및 기관과 그 산하기관에 재정적 의무를 이행한 후에 한하여 자유구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 상기 명시한 비용은 「1994년 제32차 국왕령」에 명시한 세금과 비용징수규칙에 따라 징수한다.

제4절 물품

제16조 수입금지물품의 경우는 제외하고 자유구역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자유구역 내에서 또는 자유구역 간 어떠한 규제 없이 운송을 허용한다.

제17조 자유구역으로 수입되거나 자유구역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제18조 자유구역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자유구역 내 체류기간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자유구역운영기관이 물품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다르게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 자유구역에서 제조 및 조립된 물품은 국외 또는 다른 장소로 수출 시 정부가 체결한 국제협약을 준수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으로 취급한다.

제20조 자유구역으로부터 관세지역으로 반출하는 물품은 국내원자재를 포함한 경우라도 외국물품으로 취급한다.

제5절 벌칙

제21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5,000오만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행위에 사용한 재산을 몰수한다. 재범 시 배에 달하는 벌칙에 처한다.